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민홍철·문대림·박용갑

백혜련 • 이건태 • 이연희

이재강・조 국・한정애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의 주거 및 의료 복지를 위하여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'양로시설'과 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·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편의를 제공하는 '노인요양시설'에 관한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 내의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 하여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

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내용과 연계하여,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4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하여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공공주택에 설치된 양로시설 등의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5조의2(공공주택에 설치된 양
	로시설 등의 운영) 국가나 지
	방자치단체는 「공공주택 특별
	법」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되
	어야 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
	요양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.